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8
------	-----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0일
- 다. 상정결과 :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및 시민 예술창작을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시설로서,
-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을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 소재지 : 성북구 종암동 28-358
- 시설규모 : 연면적1,997m<sup>2</sup>(성북구청 소유, 무상사용)
- 개관일자 : 2010. 7.28
- 이용대상 : 예술가 및 인근지역 시민(어린이, 청소년 포함)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3.01.01 ~ 2015.12.31)
- 위탁업무
  - 「성북예술창작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
  - 「성북예술창작센터」의 홍보, 안전대책에 관한사항
  -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운영 등
- 소요예산 : 605,624천원(2013년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10.02.01 ~ 2012.12.31(3년, (재)서울문화재단)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창작공간 운영은 예술가 창작지원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3호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동의안은 2010년 7월 28일 개관한 「성북예술창작센터」에 대하여 현재 해당 공간을 위탁 운영 중인 서울문화재단에게 향

후 3년간(2013.1.1. ~ 2015.12.31.)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임.

- 2013년부터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한 창작공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의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으나, 11개의 창작공간 중 동 공간(성북구의 소유)을 포함한 4개 공간(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교예술실험센터, 남산예술센터)은 서울시의 소유가 아니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함.
- 동 동의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대로, 서울문화재단에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그간의 서울문화재단이 해당 공간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의 창작공간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체 공간에 대한 통합적 운영의 측면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화예술분야 민간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경쟁 입찰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특히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 이외에도 SH공사의 “가든 파이프”, 시민소통기획관의 “신청사 지하공간활용사업”까지 관여함으로써 문화분야의 시설관리 공단화가 되어감에 따라 문화정책 수립과 예술지원이라는 재단 고유의 핵심사업이 위축되거나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함.

-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성북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가 창작공간과 시민문화 창작센터 및 구 보건소 성격을 콘셉트화 한 문화예술 치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총예산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2011년 7억8천6백만원, 2012년 7억9백만원, 2013년 6억6백만원) 이 중 순수한 사업비 규모는 2013년의 경우 35%에 그치고 있어 사업비 대비 공간시설 유지 및 인건비 비중이 높은 실정이므로 공간에 대한 활용도 및 이용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특별히 요청된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8
----------	-----

제출년월일 : 2012년 8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및 시민 예술창작을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시설로서,
-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을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 소재지 : 성북구 종암동 28-358
- 시설규모 : 연면적1,997m<sup>2</sup>(성북구청 소유, 무상사용)
- 개관일자 : 2010. 7.28
- 이용대상 : 예술가 및 인근지역 시민(어린이, 청소년 포함)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3.01.01 ~ 2015.12.31)
- 위탁업무
  - 「성북예술창작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
  - 「성북예술창작센터」의 홍보, 안전대책에 관한사항
  -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운영 등

- 소요예산 : 605,624천원(2013년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10.02.01 ~ 2012.12.31(3년, (재)서울문화재단)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창작공간 운영은 예술가 창작지원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3호

-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